

#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주요국의 반독점법 적용동향



서 천석  
변리사, 변호사(미국)

## 1. 머리말

미국은 통상법에서 더 나아가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평정하는 도구로 반독점법 또는 공정경쟁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세계에 대한 반독점법의 확대적용 의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예컨대, 독일의 한 피스톤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경쟁사 주식을 사들이

면서 기업결합 사전승인 신청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5백만 달러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한, 일본의 팩스용지 제조업체인 Nippon Paper사의 직원 1명이 미국 출장 중 느닷없이 구속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과거에 흡수 합병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팩스용지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만의 경향은 아니다. 예컨대, EU는 국내 S사가 미 캘리포니아의 한 컴퓨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데 늑장을 부렸다는 이유로 3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반독점법 적용을 확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자국의 기업 및 소비자 보호에 있다. 즉, 반독점법의 적용을 통해 외국기업의 활동을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다. 이하에서는 자국의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정복함에 있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복병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각국의 반독점법 적용동향

### 1) 미국

미국 법무부는 2004년 9월 15일 독일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사에 대해 반독점법상 담합 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 6,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피니온은 관련 업체들 간에 생산을 줄여 D램 가격을

끌어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부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1~2002년 중 세계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담합해서 D램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2002년 6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미 법무부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Dell, HP, Apple, IBM, Gateway 등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 독일 인피니온 등으로 전세계 D램 부분 1~4위 업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005년 4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하이닉스가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미국의 반독점 위반 관련 벌금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한다. 법무부 조사와는 별도로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도 지난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인피니온, 지멘스 등을 상대로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참고로, 인피니온과 하이닉스가 받아들인 벌금형은 Plea Bargaining에 의한 Plea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검사와 피의자가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감형을 받기로 합의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종료하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미국 형사사건의 독특한 절차의 하나이다.

인피니온과 하이닉스에 대한 담합혐의 인정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하이테크 시장에서 독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언급되지 않은 다른 D램 회사들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2) EU

EU와 관련된 최근의 반독점 분쟁사례로는 EU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간 분쟁을 들 수 있다. EU와 MS사간의 반독점 분쟁은 EU집행위가 서버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 파는 MS사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 MS사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응징으로 기록적인 4억 9,700만유로(6억 2,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MS사가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대폭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MS사는 이에 불복했고, 유럽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약속 이행을 미룬 채 실랑이를 거듭하였다. EU집행위는 MS사의 지시이행 여부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윈도 운영체제 정보공개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MS사에 5월 말까지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강력한 최후통첩을 하였다.

### 3) 일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J)은 지난 3월 8일 인텔 재판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도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일본시장에서 인텔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 2002년 78%에서 지난해에는 90%로 상승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AMD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에서 8%로 떨어졌다. AWJ 보도에 따르면, 소니와 도시바가 AMD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인텔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어 AMD의 입지가 위축되었다고 한다.

인텔 재판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JFTC가 11개월 간의 조사를 벌인 후 결정된 것이다. JFTC는 인텔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일본의 반독점법 제3조를 위배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인텔 재판은 AMD가 시장점유율을 잠식해가기 시작하자 일본 전체 CPU 판매량의 77%를 소화하고 있는 5대 주요 PC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인위적으로 AMD 제품의 채택을 제한시켰다고 판정했다. JFTC가 구체적으로 밝힌 인텔 재판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아래와 같다.

- 인텔은 한 PC 제조업체에게 100% 인텔 CPU만 구매하도록 강요했으며, 다른 한 업체에게는 경쟁사 제품을 10% 이내로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 인텔은 AMD CPU가 유통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PC 제조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줌으로써, 업체들이 단일 브랜드명 하에 모든 컴퓨터 제품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텔 CPU만 사용하게 했다.
-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리베이트를 비롯, 미국 인텔 본사에서 제공하는 시장 개발 펀드와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 4) 중국

중국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反壟斷法)을 제정, 이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5

년을 '상법 제정의 해'라고 규정하고, 상업과 관련한 10여개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 반독점법으로, 지난해 12월 초 중국 상무부는 이미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독점법 마련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중국이 반독점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이 때 법안 마련을 위한 테스트 포스팀을 마련하여 심층적인 논의와 법안 수정을 하여왔다.

반독점법이 실행될 경우 중국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반독점법이 특정 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반독점법 운용의 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몇몇 다국적 기업은 일부 품목에서 중국 시장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개방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씩씩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공상총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MS사는 중국내 직원 수가 1천명 남짓 하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PC에 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데 성공해 시장 점유율 95%를 자랑하고 있다. 코닥은 산터우(汕頭)와 샤먼(廈門), 우시(無錫) 등지의 중국 업체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감광재료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일본계 후지의 시장 점유율 25%까지 더할 경우 2개의 외국 기업이 시장을 완전 장악한 셈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는 금융과 교육, 세관, 전신 등 중국내 거의 모든 지주산업에 진출했다. 그 결과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에 중국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며, 중국 4대 통신회사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다. 소니는 일반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해 전체 카메라 시장 점유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은 반독점법 적용을 통해 외국기업의 견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 배경에는 다분히 자국의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될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흥망과 직결되는 현지 제도에 대한 간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